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1
------------	------

2017년 2월 2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2월 16일, 박기열 의원
2. 회부일자 : 2017년 2월 17일
3. 상정일자 :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7년 2월 28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기열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안 제6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2월 16일 박기열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661호로 발의되어 2017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오늘날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학업을 중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된 대안교육은 전통적·획일적 학교교육과정이 아닌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중단 방지와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의 대안교육은 교육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크게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위탁되어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학력이 인정되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서울다솜학교(공립, 다문화), 지구촌학교(사립, 다문화), 여명학교(사립, 새터민), 서울실용음악학교(사립, 실용음악) 등 4개의 대안학교가 있고,
비록 학교는 아니지만 교육감으로부터 일부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하는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39개 기관(2016년 9월 기준)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붙임]참조).¹⁾ 이 밖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1] 대안교육 기관 비교

구분	개념	예산지원
인가 대안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 ○ 학교 분류상 ‘각종학교’에 해당 	공립: 기본운영비 지원 사립: 운영비 미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교육기관이나 민간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적을 일반학교에 두고 교육청에서 지정한 위탁 기관에서 교육 	기관운영비, 학급운영비, 학생교육비 등 지원
미인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 인성교육 등을 실시 ○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서울시 청소년정책팀에서 일부 지원 	교육청 지원 없음 (일부 기관은 서울시에서 인건비, 급식비 지원 받음)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매년 서울시교육청의 공모에 의해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됨. 2016년도의 경우 당초 40개 기관이 지정되었으나 1개 기관이 중도에 지정취소 되었음.

[표-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내역

(단위 : 개, 명, 천원)

구분	지원기관수	참여학생수				지원액
		초	중	고	합계	
2014	37	14	424	642	1,080	2,859,849
2015	38	23	421	699	1,143	3,120,298
2016	36	38	375	738	1,151	3,161,882

○ 한편 동 조례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 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들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칙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의 적용범위, 지원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과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3] 최근 3년간 서울시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연도	초			중			고		
	총학생수	부적응 관련	비율 (%)	총학생수	부적응 관련	비율 (%)	총학생수	부적응 관련	비율 (%)
2013	469,215	369	0.08	304,251	1,245	0.41	333,705	4,058	1.22
2014	456,941	488	0.11	286,826	955	0.33	320,398	3,339	1.04
2015	450,422	446	0.10	263,466	744	0.29	308,306	2,879	0.93

[표-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 개요2)

대상	정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학적	원 소속 학교
졸업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소속교의 졸업장 수여
출결 및 성적처리	위탁 기관에서 취득한 것을 소속 학교에서 그대로 인정

2) 김미숙, 백성준, 옥준필, 「대안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12.31.),33쪽

수탁 해제	생활지도상의 문제나 위탁학생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규정에 의해 '대안교육운영위원회' 심의와 재적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함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생은 소속 학교에 납부, 소속 학교에서는 추후 공문 절차에 따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급
위탁 시기	월 2회(1일, 15일) 연중
교육 과정	보통교과는 최소화 운영하고, 2/3정도 이상은 인성, 소질·적성, 진로교육 등 대안교과로 편성·운영
위탁 기간	통상 해당 학년까지이며, 재위탁 가능(위탁 기관장과 소속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
교육내용	보통교과 1/3이상, 대안교과 2/3 이내로 운영하며, 국어, 사회(국사포함)는 일반학교의 50/100 이상을 교육하여야 하고, 대안교과는 인성교육, 직업교육,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대안교육 등의 정의 및 동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동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규칙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의 경우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의견(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의 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는 안 제4조의 지원계획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비 지원의 성격이 기관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위탁 학생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에 한정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7년도의 경우 경비지원의 범위를 “기관운영비와 학급운영비, 학생당 경비 등”으로 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설비, 기관운영비,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³⁾

- 한편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당 기관운영비 14,000천원, 학급당 학급운영비 18,580천원, 학생1인당 학생경비 1,600천원 및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의 형태로 13,000천원 등 총 36개 기관⁴⁾에 31억 4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상 “기관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성격의 경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규칙이나 내부 지침 등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표-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기준 내역(2017년)

(단위 : 개, 명, 천원)

구분	기관 지원비(1기관당)		학급 지원비	소계 (A)	학생당 경비* (B)
	기관운영비	인건비보조금			
1학급 기준	14,500	15,000	20,000	49,500	-
2학급 기준	14,500	15,000	40,000	69,500	-
3학급 기준	14,500	15,000	60,000	89,500	-
4학급 기준	14,500	15,000	80,000	109,500	-

※ 기관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위탁일수, 학교 운영 형태에 따라 차등지원

※ 학생당 경비*는 2016학년도 등록금에 준하여 위탁일수에 따른 등록금의 일할 계산분을 지급

- 2016년 1명당 연간 1,654,200원 기준

3)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의견(안 제5조제2항)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업중단 및 위기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및 교무 업무 지원, 재적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절차 안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2017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참고.

4) 2016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40개 기관 중 타시도 위탁교육기관 4개(대전해맑음학교, 꿈자람대안학교, 인천한누리학교, 하늘빛대안학교)를 제외한 36개 기관 지원

[표-6] 대안교육지원센터 지원 업무 현황

구분	세부 업무
학생 및 학부모 지원	전문상담 제공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소개 및 위탁교육 절차 안내
재적학교 지원	위탁교육 절차 안내
	AEIS 교무업무 지원
	NEIS 교무업무(위탁학생) 지원
	원격지원(Helpcom)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교무·행정업무 지원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AEIS)을 통한 위탁서류 작성 방법 안내
	연수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홍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컨설팅 및 평가 지원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의 경우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보다 안정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현재 대안교육지원센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양적확대 및 학생과 학부모 상담의 증가 등 대안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전문상담사가 학생상담 지원 및 재적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인력확충 및 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방안 마련을 통해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의 지원
3. 소질 및 적성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의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